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 2021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)됨에 따라, 기후보건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업의 실적, 전담인력 및 업무공간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 (안 제13조의5제1항, 제13조의5제2항, 제13조의5제3항, 제13조의5제4항, 제13조의5제5항 신설,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 신설)

1) 국공립 연구기관 등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수행 가능

나.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신규 지정에 대한 방법 마련 (안 제13조의6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5(전담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당기관의 사업 실적에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보건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
 2. 해당기관은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 3. 해당기관은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
-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2

호서식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해당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6(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) 법 제37조의3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신규 지정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5(전담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해당기관의 사업 실적에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보건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</u> <u>2. 해당기관은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</u> <u>3. 해당기관은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</u> <u>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</u>

<신 설>

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해당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3조의6(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) 법 제37조의3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신규 지정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	
연 락 처	(043) 219 - 2951

[]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(변경)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 지정 30일 기간 변경 15일
신청기관	기관장 성명 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
	기관명	전화번호	
	소재지		
변경사항	변경 전 변경신청서 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변경 후 변경신청서 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
지정서 재발급사유	지정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

「보건의료기본법」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기후보건영향평가에 관한 기획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3. 기후보건영향평가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한 실적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) 2. 사업자등록증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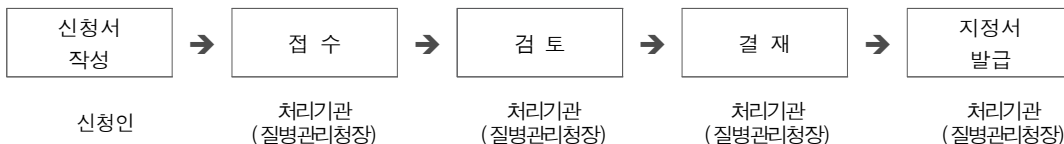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지정번호 제 호

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

○ 기관명 :

○ 소재지 :

○ 대표자 :

「보건의료기본법」 시행령 제13조의5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후 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

「보건의료기본법」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